

폭로의 조건



가히 '폭로의 시대'다. 공인의 성매매 의혹으로부터 일반인의 사소한 비위 행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폭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패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강남패치' '한남패치' '성병패치' '오메가패치' 등으로 이름도 다양한 이들 SNS 폭로 계정 은 공인 아닌 사람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게다가, 제보를 토대로 별다른 사실 검증 없이 게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마저 높다. 이런 식의 폭로는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욕주기'라는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사적 형벌에 해당한다.

물론, 모든 폭로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언론에 의한 사회지도층의 비리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또, 흔히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 문제에 대한 폭로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양심적이면서 용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폭로 또한 얼마든지 공익적일 수 있는 것이다.

A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코끝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의 피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얇다는 사실을 의사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A 측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여기서 (성형수술)하면 완전 '좀비'가 됩니다"라고 썼다.¹⁾

A의 폭로에 병원은 소송으로 맞섰다. A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겼다. 법원은 "해당 게시판은 병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를 자유롭게 적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후기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전에도 식당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관련 이용후기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한 바 있다.

'폭로'의 사전적 정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일을 드러냄'이다.

폭로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대상이나 동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폭로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폭로는 항상 불쾌하며 당황스럽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폭로는 정당하고 어떤 폭로는 부당하다는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몇 해 전, 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다. 하필이면 마지막 항암치료였다고 한다. 3년 간의 치료를 잘 견뎠는데 마지막 주사를 맞은 지 나흘 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졌는데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이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살 난 아들 ○○ 군을 떠나보낸 부모의 사연을 소개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빈크리스틴' 오용 의료사고라는 해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의 어머니는 아들을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진실'이다. ... 이런 뜻에 따라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독자들이 사고를 낸 게 누구인지보다 '사고의 진실이 어둠에 파묻히는 구조'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유가족의 바람이다.²⁾

기사에서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는 소신이 필요한 법이다. 그 소신이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의 분출이 아닌,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조차 진실 규명이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절제된 기사 하나가 폭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로는 합리적인 토론을 작동하게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공론장에 올릴 만한 사안인지부터 신중하게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개 혹은 보도의 공익성이야말로 정당한 폭로의 조건이 아닐까 싶다.

1) 2016.7.11. 조선일보 <성형수술 실패한 병원, 포털에 "좀비된다" '악플' 쓰면 명예훼손일까> 제하의 기사

2) 2011.5.27. 프레시안 <주사 한번 맞고 죽은 9살 ○○이... "의료사고가 남 일?"> 제하의 기사